

2023년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지원사업 심의결과 발표

1 추진 경과

- 사업명: 2023년 청년예술지원
- 심의 대상사업: 총 530건
- 심의위원회 구성
 - 구성 및 운영
 - 「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통합 심의위원풀」 등을 활용하며 균형적인 시각 반영을 위해 성별 및 연령대를 고려하여 각 심의그룹별 3배수 내외의 심의위원 풀을 구성함
 - 3배수 심의위원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불공정행위 신고내역 및 스크랩 마스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척사항 등에 대해 내부 추가 검증을 진행함
 - 3배수 심의위원풀을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해 심의위원을 확정하며, 섭외순위는 서울문화재단 윤리경영실 참관을 통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음
 - 확정된 우선순위별 섭외를 진행하며 심의위원의 제척확인 및 공정심의, 청렴 서약서 작성을 강화하여 심의위원의 책임감을 강화하여 운영함
 - 심의위원 사전 워크숍을 통해 사업 및 심의에 대한 충분한 숙지 후 심의 진행 (상호 비공개)
 - 심의 분야 및 구성인원 : 총 6명

구분	심의그룹	심의위원
청년예술지원	청년예술지원(통합심의)	김보라, 나현, 민정아, 박정용, 정진세, 정한아

- 심의지표
 - 심의 세부 기준

심의기준	배점
창작활동의 실행 가능성/충실성	30
창작활동의 예술성/독창성	40
예술인(단체)의 성장 가능성	30

2

심의결과

- 최종 선정결과 : 총 40건 선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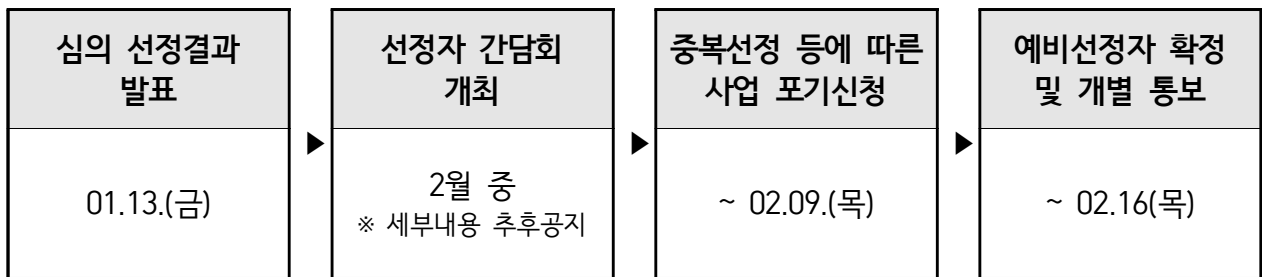
※ 선정자 명단, 심의총평은 [붙임문서. 2023년 청년예술지원사업 심의결과] 참조

구분	접수건수	최종선정결과
청년예술지원	530	40

3

향후 절차 및 일정 안내

- 향후 절차



-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및 타 기관 지원사업 중복선정에 대한 처리절차 및 방법
: 수행할 사업을 택1 후, **2023년 2월 9일(목) 18:00**까지 재단으로 통보
 - 청년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된 **동일(유사한)사업**으로 당해연도의 영화진흥위원회, 한국콘텐츠진흥원, 한국문학번역원,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국고, 문예진흥기금 및 지방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수행할 사업을 택1
 - ※ 동일 사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각 기관과 내용 확인절차 진행
 - 통보기한 이후에라도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중복선정임이 확인될 경우, 해당사업은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진행
- 기타 지원신청 부적격사항 발생 사업에 대한 처리절차 및 방법
 - 지원신청 시 제출한 지원신청책임제 동의사항에 따라 선정자(단체)는 지원사업 공고 시 안내된 지원신청 부적격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, 지원신청 당시 선정자(단체)의 지원신청 부적격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정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포기기한 내 재단으로 통보
 - 기한 이후에라도 허위사실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해당사업은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진행
- 지원사업 포기신청 기한 안내
 - 결과 발표 후, 선정된 예술인/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, **2023년 2월 9일(목)**까지 사업포기 신청을 할 수 있음

- 신청방법 : 담당자 유선 연락 후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 내 포기신청
- 신청기한 이후 사업포기 시 차기년도 재단 청년예술지원사업 심의과정에서 배제됨
 - ※ 단, 재단이 인정하는 적절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함

□ **청년예술지원사업 선정자 간담회(필수참여)**

- 일정 : 2023년 2월 중(일시 및 장소 추후 공지)
- 내용 : 지원금 운영·관리 절차 및 집행 요령 안내 등
 - ※ 선정자 대상 추후 개별 안내 예정

□ **지원금 교부 : 2023년 2월 중순 ~ 11월**

- 지원금 사용규정 및 의무이행사항에 따라 교부신청서 승인 후 지원금이 교부됨
- 2022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한 선정자의 경우, 전년도 사업 종료 및 정산·성과보고 확정 이후 올해 지원금이 교부 가능하므로 유의

□ **향후 지원사업 수행 시 행정사항**

- 선정 후에라도 위반행위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, 해당사업은 지원이 취소되거나 보조금 규정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처분될 수 있음.(서울문화재단 타 사업 환류대상자 등)
-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모니터링,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진행사항 및 실적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 요망

4

기타사항

□ **이의신청제도 운영**

- 심의절차 또는 심의위원의 의결 과정 중 심의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
 - ※ 단, 이의신청 시에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근거를 증빙자료로 첨부해야 함
- 이의신청 기간 : **2023년 1월 31일(화) 18:00**까지
- 이의신청 대상
 - 심의절차 중 행정적으로 심각한 오류가 발생되어 잘못된 결과가 발생한 경우
 -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의 이해관계, 금품향응 수수, 담합, 위계폭력 등 불공정한 심의를 한 것이 드러난 경우
 - 기타 심의과정 및 결과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업무처리가 발생한 경우
 - ※ 예술적 수월성에 기반한 이의제기는 가치판단 영역이므로 본 이의신청 대상 (범위)에 해당되지 않음

○ 이의신청 절차
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이의신청 신청접수(외부)	아래의 4가지 중 해당 여부 판단 ① 심의과정 중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② 심의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(이해관계, 금품향응 수수, 담합 등)가 확인된 경우 ③ 심의위원 자격의 결격사유(제척사유 등)가 확인된 경우 ④ 기타 심의과정 및 결과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업무처리가 발생한 경우 ▶▶ 해당 심의에 참여했던 심의위원 및 재단 관계팀(주무부서, 윤리경영실 등)의 종합판단에 따름	[미해당] 조치 없음	신청자 결과공지
		[해당] 하단 '후속조치 방안'에 따름	결과공지

※ 세부 조치방식은 사안에 따라 2단계 종합판단 시 조정될 수 있음

○ 후속조치 방안

연번	구분	세부내용
①	심의과정 중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	- 행정적 처리가 필요한 건의 경우 규정 및 방침에 따른 행정조치 적용 - 재심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 가능(전체 또는 해당 건)
②	심의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(이해관계, 금품향응 수수, 담합 등)	②-1. 신청주체와 심의위원 간 쌍방이 모두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: 해당 건 선정 취소, 재단이 정한 조치에 따라서 심의위원 자격정지(최대 10년) 등 ②-2. 심의위원에 한해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난 경우 : 해당 심의위원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심의위원의 점수 재집계 후, 선정 커트라인을 기준으로 해당 건에 대해 선정 여부 결정 *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불용액 예산 등을 활용하여 충당
③	심의위원 자격의 결격사유(제척사유 등)가 확인된 경우	- 재단이 정한 조치에 따라서 심의위원 자격정지(최대 10년) 등
④	기타 심의과정 및 결과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업무처리가 발생한 경우	- 행정적 처리가 필요한 건의 경우 규정 및 방침에 따른 행정조치 적용 - 재심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 가능(전체 또는 해당 건)